



제304회 임시회

2011.10.24.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10월 7일

○ 회부일자 : 2011년 10월 13일

3.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처분(매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천원)	처 분 시 기	처분 사유	매 도 요구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m ²)					
외 천 초	토지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산43 외	101,834	1,175,000	2011. 하반기	유휴임야를 처분하여 학교시설 확충(체육 시설)에 재투자	일반 매각	
부 강 초	토지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1036-1	1,329	84,000	2011. 하반기	유휴재산을 처분하여 교육시설 확충에 재투자	일반 매각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천원)	처 분 시 기	처분 사유	매 도 요구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m ²)					
합 계 (2건)			103,163	1,259,000				

① 외천초등학교 유휴임야 처분

- 재산위치 :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산 43번지 외 2필지
- 재산현황
 - 토지(임야) : 101,834m²(3필지)
- 추정금액 : 1,175,000천원
- 사 유 : 유휴임야를 처분하여 교육(체육)시설 확충에 재투자

② 부강초등학교 유휴재산 처분

- 재산위치 :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1036-1번지
- 재산현황
 - 토지(전) : 1,329m²
- 추정금액 : 84,000천원
- 사 유 : 유휴재산을 처분하여 교육시설 확충에 재투자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7조(재산의 승계)와 관련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
- 이 조문의 내용은 충청북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승계한다. 다만, 앞에서 열거한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출범 실무준비단)과의 2011. 9. 28. 협의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게 승계하여야 할 재산 목록은 <붙임1>과 같고, 승계 제외 재산은 <표1>과 같으며,

<표1>

승계 제외 대상 (매각예정)								(단위: 원)
학 교 명	소재지	지번	지목	취득일	면적(㎡)	대장가액(원)	현 황	특이사항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1036-1]	전	1974-10-16	1,329	50,502,000	학교밖	도로옆
외천초	부용면 부강리	[산46]	임야	1935-10-01	40,832	218,451,200	학교밖	임야
외천초	부용면 금호리	[산43]	임야	1931-03-25	30,446	148,880,940	학교밖	임야
외천초	부용면 금호리	[산1]	임야	1936-06-10	30,556	213,892,000	학교밖	임야
소 계		4필지			0	631,726,140		

※ 자료 : 도교육청 재무과

- <표1>의 승계 제외대상 재산이라 하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일(2012. 7. 1.) 이전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로 자동 승계되도록 협의되었다고 하는 바 동 협의 결과와 매각 가능 여부의 법적근거에 대한 집행청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금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외천초 임야 3필지 101,834㎡는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급경사이고 돌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강초 전 1필지 1,329㎡는 외진 곳에 있어 매각대상 재산 모두 지리적으로나 토지의 여건 등이 교육용 재산으로써 활용가치가 낮다고 판단됨.
-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 그 재원을 교육시설이나 체육시설에 활용하고자 하는 본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붙임1>

이관 대상 토지 현황

1. 이관대상(학교부지)

학 교 명	소재지	지번	지목	취득일	면적(㎡)	대장가액(원)	현 황	특이사항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22-2]	도로	1971-09-04	991	27,549,800	학교부지	진입로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96-3]	답	1995-05-29	195	4,797,000	학교부지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37-11]	전	1997-03-07	104	8,330,400	학교부지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97-1]	학	1969-10-05	40,134	2,195,329,800	학교부지	
부강중	부용면 부강리	[433-12]	도로	1966-05-05	236	21,405,200	학교부지	진입로
부강중	부용면 부강리	[432-9]	도로	1984-11-26	136	12,335,200	학교부지	진입로
부강중	부용면 부강리	[500]	학	1969-12-12	31,087	8,362,403,000	학교부지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432-10]	도로	1941-10-20	271	25,121,700	학교부지	진입로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432-3]	학	1939-05-09	1,881	569,943,000	학교부지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433-3]	학	1969-04-24	1,950	590,850,000	학교부지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488-1]	학	1935-12-10	15,966	4,358,718,000	학교부지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493]	전	1962-08-25	2,152	393,816,000	학교부지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505-3]	임야	1925-05-09	12,971	154,354,900	학교부지	
소 계		13필지			108,074	16,724,954,000		

2. 이관대상(학교 경계외 부지)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95-1]	학	1976-11-29	322	14,039,200	학교밖	답
부강중	부용면 부강리	[433-39]	도로	1988-12-21	319	78,155,000	학교밖	마을길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412-6]	대지	1963-12-30	413	48,321,000	학교밖	경찰서옆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409-2]	도로	1961-01-01	50	3,810,000	학교밖	마을길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464-1]	대지	1996-06-20	7	1,904,000	학교밖	마을길
소 계		5필지			1,111	146,229,200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1146-2]	학	1974-02-12	1,080	327,240,000	학교부지	국유지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1146-7]	도로	1974-02-12	32	2,640,000	학교밖	국유지(도로)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1146-14]	도로	1974-02-12	11	1,019,700	학교밖	국유지(도로)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1146-15]	도로	1974-02-12	11	1,019,700	학교밖	국유지(도로)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1146-16]	도로	1974-02-12	29	6,322,000	학교밖	국유지(도로)
소 계		5필지			1,163	338,241,400		
합 계		23필지			110,348	17,209,424,600		

4. 건물 현황

학교명	소재지	지번	건물명	구조	층수	면적(㎡)	대장가액(원)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488-1	교 사 1	철근콘크리트	2/0	2556.4	1,234,644,440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488-1	교 사 2	철근콘크리트	2/0	1,441.7	439,880,730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488-1	교 사 3	철근콘크리트	2/0	615.4	629,733,870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488-1	강 당	나무구조	1/0	99.2	1,847,100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488-1	구)강당	철근콘크리트	1/0	847.6	586,251,000
부강초	부용면 부강리	488-1	창 고	벽돌구조	1/0	72.0	20,948,020
소 계			6동			5,632.3	2,913,305,160
부강중	부용면 부강리	500	본 관	철근콘크리트 조	3/0	2,499.3	552,164,010
부강중	부용면 부강리	500	특별교실	철근콘크리트 조	2/0	605.8	124,193,210
부강중	부용면 부강리	500	숙 직 실	시멘트벽돌조	1/0	43.8	13,481,280
부강중	부용면 부강리	500	식 당	경량철골조	1/0	139.5	66,291,090
부강중	부용면 부강리	500	화 장 실	시멘트벽돌조	1/0	39.2	16,009,730
부강중	부용면 부강리	500	창 고	시멘트벽돌조	1/0	37.5	37,610,520
부강중	부용면 부강리	500	식 당	철근콘크리트 조	1/0	110.5	124,872,430
부강중	부용면 부강리	500	탈 의 실	경량철골조	1/0	27.0	10,068,300
소 계			8동			3,502.6	944,690,570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97-1	본 관	철근콘크리트	3/	2,938.45	2,581,256,880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97-1	후 관	철근콘크리트	3/0	2,148.36	1,205,618,630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97-1	신소재과	철근콘크리트	2/0	1,642.97	339,100,830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97-1	자동차과	철근콘크리트	3/0	3,460.28	1,261,733,250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97-1	생명정보	철근콘크리트	2/0	456.19	49,504,690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97-1	기 계 과	철근콘크리트	2/0	3,324.60	1,506,416,910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97-1	화 장 실	조적조	1/0	39.60	105,572,120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97-1	샤 위 실	적벽돌	1/0	39.6	53,678,920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97-1	보일러실	시벽돌	1/0	35	10,976,000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97-1	기 계 실	철근콘크리트	1/0	5.28	4,400,000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97-1	물탱크실	철근콘크리트	1/0	34.65	36,562,000
부강공고	부용면 문곡리	997-1	급 식 소	철근콘크리트	2/0	522	230,658,140
소 계			12동			14,646.98	7,385,478,370
합 계			26동			23,781.88	11,243,474,100

※ 자료 : 도교육청 재무과

관 계 법 령 발 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7.22] [법률 제10892호, 2011. 7.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예정지역"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라 함은 예정지역과 연결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 등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자연지형·환경성·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7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건설청장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0.12.27] [법률 제10419호, 2010.12.27, 제정]

제6조(관할구역) ①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7조(재산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충청남도·공주시·연기군·청원군 및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6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6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각각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